

◆ 급성기래정보의 제공동의서 ◆

본 식량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급성기래정보제공예원, 자정
원, 개회번호를 출금예원을 신급신정하는 때로부터 해산신정
하여지 상기 수급기래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급성기래원 거
제 및 대법정보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.

2022. 08. 01 일